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17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10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자동차정비업(원동기재생, 설계변경, 정비겸업), 자동차정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서비스업, 자동차 및 부품의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특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22. 목적에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C, D 토지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아 래 -

(단위 :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연면적	건축물대장 세부현황			현재용도
			층별	면적	용도	
B 자동차관련시설	2014.9.2.	555.48	지1층	451.63	정비공장	사고차량의 도장, 판금작업장
			1층	103.85	정비공장	수리, 정비
C 제2종근린생활시설	2014.10.1.	227.46	지1층	145.56	수리점	부품창고, 판매점
			1층	81.9	수리점	차량수리점
D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동)	2014.11.5.	276.93	1층	140.49	수리점	고객접수처, 사무실, 대기실
			2층	136.44	수리점	사장실, 회의실
D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동)	2014.11.5.	36	1층	36	수리점	수리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2014. 12. 22. 자동차종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의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합계 48,108,5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4,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E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E가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업규모 및 매출구조도 E가 영위하였던 사업과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통사고 또는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복원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일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원고는 교통사고 또는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판금·도장작업을 하여 차량을 재생·복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00. 8. 1. 상호를 'F', 소재지를 '대전 유성구 G', 업태/업종을 '서비스/자동차부분정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 7. 26.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허가를 받고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다가 2011. 6. 17.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도 기존에 E가 영위하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였으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판금 · 도장업은 영위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4. 1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고, 2014. 12. 22.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을 목적에 추가한 후 그 무렵부터 자동차정비업(판금 및 도장)을 영위하였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파손된 차량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판금 · 도장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반면, 교통사고 및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 및 복원하거나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E가 원고를 설립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제4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 조세제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원고를 설립한 것은 자신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그 업종 중 하나로 제조업을 열거하고 있고(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하나로 '구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 정비 및 구조 · 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 정비 및 구조 · 장치의 변경작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 · 장치에 대한 점검 · 정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설립 당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다가, 2014. 10. 이후에 비로소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 및 복원하거나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판금 · 도장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설립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8

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끝.